

# 지식재산권 거래의 활성화 방안

신관호 (전)대한변리사회장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는 스스로가 보유한 지식의 가치에 대하여 인식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그 지식이 진부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치가 인정된 지식 재산은  
'거래'를 통하여 지식의 가치를 표면화, 현실화시킬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지식 재산이 최종적인 가치를 갖는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창출, 거래  
및 활용을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미국과 일본, 유럽의 국  
가들처럼 지식재산권 관리의 선진국들은 이미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정교한 체계로 인해 여타  
국가들에 속한 개인과 기업은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이를 3  
개 지역의 특허를 반드시 기본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그만  
큼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가 정교함을 반  
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특허가 갖는 전략적 의미에 대하여 여타 국가들보  
다 더욱 심도있는 접근을 하고 있다. 즉, 특허는 단지 자신이  
가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타인의 도용에 대  
해 제소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지식재산권의 의미가 방어가 아  
닌 공격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지식재  
산권에 대하여 이러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특허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거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거래  
는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적절한 가격 제  
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명시적인 계약이 그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거래 당사자 간 명시적 계약 이외의 어떤  
불법적인 지식재산의 유통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일종

의 배타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렇게 확고  
한 지식재산권의 거래 체계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지식재산권 거래의 활성화를 통하  
여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대한 지식을 축적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즉, 국내 지식재산권 거래를 보  
다 성숙시키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국가적 지식  
재산권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지식재산을 생산하는 주체들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이 생산된 이후 궁극적으로 이익을 창  
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해 열린 인식이 필요하다.  
순수한 의미에서 지식재산은 인간의 진보와 지적 만족을 달  
성시키는 것만으로 그 역할을 다한 것이라 만족할 수 있겠지  
만, 현실적으로 지식재산은 일정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거  
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식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지  
식재산권의 거래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이는 단지 향후 만들어질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이익에  
급급하라는 말이 아니라, 창출된 지식이 일정한 권한을 갖  
게 되면 이것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라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창  
출 과정에서부터 자신이 만들어내는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챙겨야 할 것이다. 연구 과정  
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하고, 자료에 대한 보안과 창출된 지  
식을 공개하는 형태 및 순서(논문 혹은 특허) 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보다 체계적인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국내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 기관은 대학교, 공공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각의 기관들은 생산된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이들이 거래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자체적인 지원 부서를 두고 있다. 문제는 이들 지원 부서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이다. 지식재산권의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형성된 지식재산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지식재산의 상품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마케팅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식 이전 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지원 부서는 현재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과제와 향후 추진될 연구 대상에 대해 지식재산으로써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기능과 창출된 지식재산을 수요할 수 있는 기업 등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능과 이전 과정에서 적절한 값어치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각 연구 기관의 지식재산 관리 지원 부서의 기능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식재산 중 국가 차원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고급 기술의 경우 단위 연구 기관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 국가가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식재산권 거래를 위한 자원의 공급이 필요하다. 거래 시장이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모두 충분하게 존재해야 할 것이다. 유통되는 지

식재산의 질이 낮은 경우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 지식재산권 거래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결국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의 질을 높이는 근본은 이를 만들어내는 인력의 고도화와 연구 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지식재산권의 활발한 거래는 우수한 지식의 공급에서 비롯되고 이는 넉넉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 차원의 연구 과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가운데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물론 방만한 연구 과제 운영으로 인해 예산이 헛되어 사용되는 경우는 막아야 하겠지만, 국가 차원의 지식 및 경제적 역량을 좌우할 만한 많은 연구 과제들이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부실하게 수행되는 것 또한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 거래의 활성화는 지식 생산의 주체의 인식 변화와 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 그리고 지식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을 통한 공급유지 등이 한 데 어우러짐으로써 실현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에 있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식재산권 거래 시스템의 정착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결국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활발한 지식재산 거래를 통해 우리의 지식재산관리 역량도 선진국의 그것과 대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발명특허 2009. 9

